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사적분과 소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9. 6. 26. (수요일), 14:00 ~ 17:3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03호

▣ 출석위원 : 이재운, 김건수, 유재춘, 이순희, 이승용, 진상철(이상 6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 대구중부경찰서 건물 신축	(공 개)
2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사찰 증축	(공 개)
3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잠수교 숭상(개량)공사(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4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주변 진입로 확장	(공 개)
5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주변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신축	(공 개)
6	사적 제398호 단양 수양개 유적 수변탐방로 조성	(공 개)
7	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 주변 건물 신축	(공 개)
8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 주변 탐방로 정비	(공 개)
9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 주변 전신주 설치	(공 개)
10	사적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주변 체험농장 조성	(공 개)
11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주변 건물 신축	(공 개)
12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3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14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15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	(공 개)
16	사적 제29호 경주 헌덕왕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17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	(공 개)
18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 개)
19	사적 제458호 순천 월평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0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주택단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21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 단독주택(10개동) 신축	(공 개)
22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4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공 개)
25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6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7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 주변 입목벌채 및 작업로 개설	(공 개)
28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태양광시설물 설치	(공 개)
29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공 개)
30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공 개)
31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공 개)
32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공 개)
33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공 개)
34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도시계획도로(소2-22호) 개설	(공 개)
35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도시계획도로(소2-23호) 개설	(공 개)
36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37	사적 제192호 부산 동래 패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38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39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40	사적 제366호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 주기장 및 사무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41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42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설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01

1.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 대구중부경찰서 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에 대구중부경찰서를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에 대구중부경찰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4차 소위원회('19.04.24.) 보류 : 대구시 경상감영지 보존 및 활용계획 등 확인 후 재심의
-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 대구중부경찰서 신축에 대한 의견 요청(2019.04.26.) / 대구시 회신(2019.05.17.)

1. 대구 중부경찰서 일대는 1466년 대구도호부의 설치 이래 대구부 관아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 2015년에 수립한 「경상감영 복원정비계획」상 3·4단계 복원 대상 사업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대구중부경찰서 신축과 관련한 현상변경 심의시,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공공기관의 공익목적 실현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아래의 조건 하에서 신·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상감영 복원정비 계획에 지장이 없고(매장문화재가 없을 것), 사적 제538호 '대구경상감영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

나. 현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공익목적 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하여 신·증축이 불가피한 경우

- '19년 5차 소위원회('19.05.22.) 보류 : 자료 보완 후 재검토(시발굴조사 계획, 건물높이 조정 안, 이전 대상부지 검토자료 등)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심의 '자료보완 요청사항' 제출 : '19.6.14./중부경찰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경상감영지(사적 제538호 / 2017.04.26. 지정)

○ 소 재 지 :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99

(3) 신청내용<**대구중부경찰서 건물 신축**>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건축 높이 26.2m / 지하 3층
- 대지면적/연면적 : 3,471.1㎡ /17,500㎡
- 용도 : 공공건축물(경찰서)

구분	현황	당초 ('19.4.24)	금회 ('19.6.26.)	비고
대지면적	3,471.1㎡	3,471.1㎡	3,471.1㎡	
건물높이	23.9m(옥상계단실) + 2.3m(태양열집열판) = 26.2m	31.6m	26.2m	저수탱크, 철탑 제외
건축연면적	7,632.58㎡ A. 본관동(지하1층/지상5층) : 6,016.25㎡ B. 숙영시설동(지하1층/지상4층) : 1,262.97㎡ C. 탄약고(지상1층) : 19.68㎡ D. 정문초소(지상1층) : 16.32㎡ E. 사무동(지상2층) : 317.66㎡	16,217㎡ 본관동 (지하3층/ 지상7층)	17,500㎡ 본관동, 숙영동, 탄약고, 정문초소, 지하층	△ 229%

(4) 신청인 의견

○ 대구 중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써, 협소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구 경상감영지(사적 제538호) 문화재의 주변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높이로 신축코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4.18./문화재위원 ○○○, ○○○, ○○○, ○○○, ○○○, ○○○)

○ 경상감영 문화재 구역 관련 고증 및 복원 등 종합적 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구역의 역사문화환경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으나, 건물 규모가 커졌을 경우 경관 저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발굴조사 선행할 것
- 현 높이(26.2m) 이내로 신축하되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할 것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02

2.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사찰 증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에 사찰을 증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에 창녕 창화사의 창고 용도를 위한 증축 사항임

- '18년 11차 위원회('18.11.14.)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9년 5차 소위원회('19.05.22.) 부결 : 문화재 경관 및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 2011.07.28. 지정)

○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송현리 일원

(3) 신청내용<사찰 증축>

○ 위치 : 경남 창녕읍 송현리 110{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개별심의)}

구분	'18년 11차 신청-부결	'19년 소위5차-부결	금회 신청안
건축면적	277.86㎡	277.86㎡	277.86㎡
연면적	814.26㎡	546.06㎡	391.26㎡
높이	13.85m(3층)	10.85m(2층)	8.60m(2층)

(4) 신청인 의견

○ 신청부지는 기존 종교시설인 사찰이 있는 종교용지로 기존의 사찰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 사찰(요사채, 창고)을 증축하고자 함. 신청부지와 인접하여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있어 증축을 함에 있어서 경관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증축을 계획할 것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11.01./문화재위원 ○○○, ○○○)

○ 본 건은 허용기준 1구역 내 고분군으로부터 10m 이격된 곳에 13.85m/3층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써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과 시가지 사이에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03

3.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잠수교 숭상(개량)공사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주변에 잠수교 숭상(개량)공사를 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당초 안동 도산서원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기존 잠수교의 규모를 상향하여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였으나, 문화재경관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1구역)에 교량을 신설(H:2.9m)하는 것으로 허가한바 있음

- '18년 6차 위원회('18.06.20.)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8년 9차 위원회('18.09.05.) 부결 : 문화재보호구역 경관 훼손 우려(교량의 높이 등 규모 과다)
- '18년 8차 소위원회('18.10.24.) 조건부가결 : 위치·교량의 디자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18.7월 이후 안동댐 평균수위가 상승(147m 이상)됨에 따라 기 허가 교량의 높이를 상향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 1969.05.28. 지정)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3) 신청내용<**잠수교 숭상(개량)공사**>

○ 위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의촌리 일원{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기 허가내용	금회 신청안	비고
○ 위치 : 개별심의구역 ＊ 기존 잠수교 외 추가 건설 ○ 사업규모 - L=232m, B=4.45m, H=2.9m - 도로(4.45m) : 폭3.25 + 길어깨 양쪽0.6 + 난간(폭 0.6, 높이 0.2) - 차량교행2개소(L=20m,B=6.95m) - 파형강판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 문양거푸집	○ 위치 : 개별심의구역 ＊ 기존 잠수교 외 추가 건설 ○ 사업규모 - L=404m, B=4.45m, H=7.7m - 도로(4.45m) : 폭3.25 + 길어깨 양쪽0.6 + 난간(폭 0.6, 높이 0.2) - 차량교행 2개소(L=20m,B=6.95m) - 파형강판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 문양거푸집	**증 L=172m** **증 H=4.8m** **위치조정**

(4) 신청인 의견(변경사유)

○ 당초 현상변경 허가('18.10.) 당시 2007~2018년까지 평균수위 147.0m 기준으로 할 경우 325일 정도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2018.07.월부터 현재(2019.05.30.)까지 댐수위가 147.0m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현상변경 허가조건 수위인 147.0m로 할 경우 연중 물에 잠기게 됨에 따라 152.0m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서 제출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로 지역주민들은 곧 교량이 설치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불가시 집단민원 발생 및 행정신뢰성 훼손

○ 댐 물관리청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2018.06.)되면서 담수위주의 물관리 정책으로 댐수위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7.16./문화재위원 ○○○, ○○○)

○ 현재 교량은 안동댐 수위조절에 따라 통행일수가 줄어들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된 것은 인정됨.

○ 주민의 생활에 편의증진과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소한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신설 교량의 높이 조정에 따른 통행량을 단계별로 조사 및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교량의 폭은 기존 교량과 같이 편도 및 부분 교행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을 위한 교량의 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자료미흡으로 심의 불가(댐 수위에 따른 교량 조감도, 최근 1년간 댐 수위 data 등)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04

4. 청주 상당산성 주변 진입로 확장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주변의 진입도로를 확장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 1970.10.01. 지정)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내로 124번길 14

(3) 신청내용**<진입로 확장>**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204-1(1구역, 구역 외)

○ 사업내용

- 진입로 확장(B8~10m→B15~19m) 740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05

5. 서울 경모궁지 주변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주변에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경모궁지 주변에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경모궁지(사적 제237호 / 1973.08.14. 지정)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번지

(3) 신청내용<**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30m 이격 /2구역(심의구역)}

○ 사업내용

- 사업범위면적 : 6,060㎡
- 건축면적 : 2,629.56㎡
- 연면적 : 15,167.38㎡(지하층 3,965.75㎡, 지상층 11,201.63㎡)
- 규모 : 지하2층, 지상6층(높이 27.9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06

6. 단양 수양개 유적 수변탐방로 조성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사적 제398호 「단양 수양개 유적」 주변에 수변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단양 수양개 유적 주변에 수변탐방로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단양 수양개 유적(사적 제398호 / 1997.10.10. 지정)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82-1

(3) 신청내용<**수변탐방로 조성**>

○ 위치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93-16(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수변탐방로 조성 4,669㎡(데크로드, 안전난간, 야자매트, 켄틸레버 확장 인도교, 콘크리트포장 등)
- 휴게쉼터 6개소 662㎡ 조성(나무수국, 낙상홍, 영산홍, 자산홍 식재 포함)

라.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매장문화재 보호 계획, 데크로드 적정성 여부 등)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07

7. 김제 벽골제 주변 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행위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제 벽골제 주변에 건물(소매점)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일원

(3) 신청내용<**건물 신축**>

○ 위치 : 전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389[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0m 이격 /1구역{보존구역, 농가관련 시설(창고, 주택 등) 5m 이하}}

○ 사업내용

- 건물 신축 : 1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60㎡, 최고높이 5.2m(지상1층)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08

8. 무주 적상산성 주변 탐방로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 주변에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무주 적상산성 주변에 탐방로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무주 적상산성(사적 제146호 / 1965.07.10. 지정)

○ 소 재 지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19 외

(3) 신청내용<**탐방로 정비**>

○ 위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330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1구간(420m) : 보도블럭 포장(폭2m), L형측구, 빗물받이, 이중벽PE관 등
- 2구간(680m) : 목재데크 설치 126m, 야자메트 설치 404m, 보도블럭 포장 150m, 전석쌓기(높이2m) 20m
- 3구간(37m) : 목재데크 설치 37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11./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무주 적상산성 내 안국사에 이르는 1.4㎞ 구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44주의 전신주 신설과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전신주는 도로를 따라 13m 내외의 높이로 구성되며 탐방로는 어깨길 또는 산길 일부의 석축 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지형 훼손이 적고 경관에 위해되는 요소가 적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09

9. 무주 적상산성 주변 전신주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 주변에 전신주를 신설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무주 적상산성 주변에 전신주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무주 적상산성(사적 제146호 / 1965.07.10. 지정)

○ 소 재 지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19 외

(3) 신청내용<**전신주 설치**>

○ 위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960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전신주 설치 : 44주, 높이 12~16m(매설깊이(2.5m 내외) 포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1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무주 적상산성 내 안국사에 이르는 1.4㎞ 구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44주의 전신주 신설과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전신주는 도로를 따라 13m 내외의 높이로 구성되며 탐방로는 어깨길 또는 산길 일부의 석축 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지형 훼손이 적고 경관에 위해되는 요소가 적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10

10.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주변 체험농장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사적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주변 체험농장을 조성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주변 체험농장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사적 제410호 / 1998.09.17. 지정)

○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68-1번지 외

(3) 신청내용<**체험농장 조성**>

○ 위치 : 전남 화순군 춘양면 고인돌2로 108-37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1구역(원지형 보존, 신축불가, 개재축 허용)}

○ 사업내용

- 건축물 신축 : 총 6동, 연면적 259.6㎡

구분	규모	건축면적	최고높이
관리동(주택)	1동, 지상1층	39.6㎡	4.45m
방갈로(민박)	2동, 지상1층	70(각35)㎡	4.45m
창고	1동, 지상1층	30㎡	4m
농산물가공체험장	1동, 지상1층	60㎡	4m
지렁이사육사(체험시설)	1동, 지상1층	60㎡	4m

- 진입로 설치 197m, 폭3.5m, 콘크리트 포장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5.16./문화재위원 ○○○)

○ 화순 고인돌 유적의 핵심공간인 진입광장이나 진출입로에서 신청지로의 조망·경관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지조사 과정에서 도서자료가 불충분하여 경관, 절성토, 건축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이 요구됨.

○ 사업구역(신청지) 내 지형 굴곡이 심하여 진입로 개설, 건축 등 사업 과정에서 지형 훼손이 우려되어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진입로, 절·성토에 대한 상세도면 추가 제출)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11

11. 파주 혜음원지 주변 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혜음원지 주변 저격수 사격장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혜음원지(사적 제464호 / 2005.06.13.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234-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사격장 건물 신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70-1임{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3m 이격/3구역(평지붕 8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신청(안)	비고
신청면적	1,335.0㎡	
지 목	임	
건축면적	78.2㎡	
연 면 적	381㎡	
절·성토높이	0.2~2.7m	
규 모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20.15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높이 과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12

12.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석장리 유적 (사적 334호 / 1990.10.31. 지정)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 일원

(3) 사업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2-1(현 지번은 석장리동 92-6으로 변경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신청내용

- 허가기간 연장

· (기존) 2014.12.1. ~ 2019.6.30. (변경후) 2014.12.1. ~ 2020.5.31

- 기허가사항

· (주택 및 진입로) 대지면적 730㎡ /건축면적 93.56㎡, 높이 5.3m / 1층 / 진입로 170㎡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13

13.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1970.05.26.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187-1)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406{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82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신청내용	비고 (인접위치 기 허가사항)
사업면적	2,529㎡	734㎡
연면적(건축면적)	1,920㎡(960㎡)	480㎡(240㎡)
최고높이	7m/지상2층/평지붕/4동	7m/지상2층/평지붕/1동
건축구조	철골조	철골조
가로길이	20m	20m
심의결과		원안가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21./문화재위원 ○ ○ ○, 전 문화재위원 ○ ○ ○)

○ 화성 융릉과 건릉 근린생활 신축건은 기허가가 난 지역 상부에 같은 높이와 규모를 가진 4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임

○ 신청건물 중 3동은 융건릉에서 95m이격되어 있고 1동은 82m 이격되어 있음
○ 82m 이격되어 있는 신청건물은 1m정도를 하단부로 위치 조정한 후 차폐 식재할 경우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할 것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14

14.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3차 소위원회('19.03.27.)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1970.05.26.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187-1)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6, -7, -24, -50, -53{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5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17년 2차 소위원회 -조건부가결	'19년 3차 소위원회 -부결	신청내용	비고
사업면적	1,078㎡	1,313㎡	1,313㎡	
연면적(건축면적)	198㎡(198㎡)	409㎡(257.5㎡)	754㎡(390㎡)	
최고높이	5.5m (지상1층/경사지붕)	7.5m (지상2층/경사지붕)	7.9m (지상2층)/평지붕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진출입로 폭 6m/ 길이 15m	진출입로 폭 6m/ 길이 15m	
심의결과	건축전문가 자문 후 시행	부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21./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 신청지는 기허가난 식당, 커피숍 등 건물(최고높이 6.3m)이 들어선 지역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음.

○ 신청건물의 최고높이는 7.9m이지만 이는 엘리베이터 구조물을 감안한 것으로 종전 허가 건물과 비슷한 높이임

○ 기준점(G.L)을 고려하였을 경우 기 허가 건물 높이와는 차이가 없으나 전면 부분에 주차장이 위치한 곳에 건물 측으로 상록교목을 추가 식재하여 차폐할 필요성이 있음. 이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요인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할 것(건물 높이 등)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15

15. 종묘 주변 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대문 앞 공원에 '19년 어르신 문화 특화거리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조성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종묘 주변 대문 앞 공원에 악극 및 노래 공연 등을 위한 무대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5호 / 1963.01.18. 지정)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

(3) 신청내용<**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메인무대 : 길이10m×폭6m×높이3.6m
- 진료용 몽골텐트 : 6개(5m×5m×5m)
- 관람의자 배치 : 480개

※ 무대위치 종묘 대문과의 거리 15m 이격

(4) 신청인 의견

○ 어르신들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통해 생활의 활력과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 시키며, 필수 건강 검진을 병행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을 구현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12./문화재위원 ○○○)

○ 종묘 전면 진입공간 지정구역과 접해 있는 1구역에 행사를 위해 무대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종묘라는 문화재의 정적인 공간에 접하여 실시하는 공연 등은 문화재 가치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16

16. 경주 헌덕왕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9호 「경주 헌덕왕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헌덕왕릉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5차 소위원회('19.05.22.)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헌덕왕릉(사적 제29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108-2{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815㎡
- 건축면적 : 195.3㎡ / 연면적 : 195.3㎡
- 최고높이 : 4.55m
- 구조 : 경량철골구조, 판넬 위 아스팔트쉉글
- 토목공사 : 없음

(4) 신청인 의견

○ 위 신청위치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필요하여 건립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19./문화재위원 ○○○, ○○○)

○ 본 신청건은 헌덕왕릉에서 220m 이격되어 있는 부지(1구역)에 단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현지조사 결과 경주시에서 헌덕왕릉으로 진입하는 경관을 고려할 때 신청건물이 시야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반대로 헌덕왕릉에서 신청지를 보았을 때 멀리 위치한 안산과의 축선상에 신축건물이 세워져 적절하지 않음.

(2) 현지조사의견('19.05.14./문화재위원 ○○○)

○ 신청지는 경주 헌덕왕릉(사적 제29호)에서 220m 떨어져 있는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되는 곳임.

○ 이곳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바, 건물의 위치가 마을과 인접해 있고 헌덕왕릉과 이 신청지 사이에 새로 포장된 도로가 놓여 있음.

○ 건물은 단층으로 시각적으로 무난함. 다만, 인근에서 과거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유구/유물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공사 시행 전에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공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17

17. 경주 이견대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이견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이견대(사적 제159호 / 1967.08.01.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61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46-3{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4m 이격/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사업내용

- 건축규모 : 1개동(지상 2층)
-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 건축면적/연면적 : 146.12㎡/199.67㎡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 지상2층(경사지붕 9.5m)

＊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신청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건축면적	146.12	100	＊ 비경사지붕 허용 면적 146.12×1/8 = **18.27**
비경사지붕면적 1층(3.2m) 2층(6.7m)	**89.42** 77.72 11.7	61.2 53.2 8	
경사지붕면적(9.5m)	56.7	38.8	

(4) 신청인 의견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건립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18

18. 경주 효공왕릉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주변 건물(버섯재배사)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효공왕릉 주변에 건물(버섯재배사)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1차 소위원회('19.01.23.)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9년 2차 소위원회('19.02.27.)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9년 5차 소위원회('19.05.22.)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효공왕릉(사적 제183호 / 1969.08.27.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14번지

(3) 신청내용<**건물(버섯재배사)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32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기존건물)

구분	가동	나동
구조 / 규모	경량철골조 / 지상1층	경량철골조 / 지상1층
높이 / 면적	5.5m / 450㎡	3.8m / 90㎡

- 태양광발전시설

구분	가동			나동		
	구조	높이	면적	구조	높이	면적
1차 신청 ('19.1.23.)	경량철골조/ 한면경사	3.8m (최고높이)	450㎡	경량철골조/ 한면경사	1.9m (최고높이)	90㎡
2차 신청 ('19.2.27.)	경량철골조/ 한면경사	3.2m (최고높이)	450㎡	경량철골조/ 한면경사	1.3m (최고높이)	90㎡
3차 신청 (금회)	경량철골조	0.2~1.0m	450㎡	경량철골조	0.2~0.5m	90㎡

(4) 신청인 의견

○ 친환경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19./문화재위원 ○○○, ○○○)

○ 경주 효공왕릉 주변 1구역에 단층건물(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임.

○ 이전 위원회에서 높이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왕릉에서의 경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현지조사를 함.

○ 조사 결과 효공왕릉에서는 인지되지 않으며 태양광 판 설치 높이도 현재 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최대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단, 신청건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주변에 이와 유사한 건물이 세워질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한쪽면만 설치할 것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19

19. 순천 월평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제458호 「순천 월평 유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순천 월평 유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월평 유적(사적 제458호 / 2004.12.27. 지정)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189-1 외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659-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단독주택 1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99.63㎡, 최고높이 4.8m(지상1층)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20

20. 강화산성 주변 주택단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 주택단지와 진입로 조성공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한 사항임

- '17.01.30.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처리(절토부분에 대해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실시토록 함) / '17.09.20. 착수신고
- '19.05.22. 기한 연장허가('18.1.11.~'19.12.31.)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1964.06.10. 지정)

○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 일원

(3) 신청내용<**주택단지 조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72-14{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1구역(개별심의), 4구역(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 동 변경 신청지의 대지 위치는 **1구역**에 위치함

○ 사업내용

- 전체 12개동 중 1개동(L동)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신청면적	595㎡	595㎡	
지 목	임야	임야	
건축면적	95.75㎡	82.24㎡	
연 면 적	79.65㎡	132.86㎡	
규 모	지상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일반목구조	
최고높이	5.5m	7.41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5.11.17.)

○ **前문화재위원 ○○○**

- 신청지 주변은 다세대 주택, 상업시설 등이 산재하여 있으며, 과거 허가를 받아 단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가 이미 일부 이루어진 상황임. 신청지 중 가장 높은 곳은 강화산성 서문 성벽이 일부 조망되나, 주변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고 이미, 지형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이므로, 신청사항에 따른 경관의 훼손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임. 다만, 주택 건립은 허가받은 범위(1층)내에서만 가능토록 함이 좋겠음

○ **前문화재위원 ○○○**

- 신청지는 강화산성에서 일부 조망되는 지역으로, 임야를 절토한 상태의 경사지임. 신청사항과 같이 추가적인 절·성토를 통해 단독주택들을 건립할 경우, 대지의 구조 안전 등을 위한 대단위 옹벽 설치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강화산성에서의 조망 경관이 많이 훼손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21

21. 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 단독주택(10개동)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 단독주택(10개동)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 단독주택 10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5차 소위원회('19.05.22.) 보류 : 세계유산 보존 영향에 대한 확인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석묘(사적 제137호 / 1964.07.11. 지정)

○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10개동) 신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410-7번지 등 1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신청(안)	비고
신청면적	14,327.0㎡	도로면적 994㎡ 포함
지 목	임	
건축면적	1,392㎡	
연 면 적	1,657㎡	
절·성토높이	0.7~4.3m/3.7m	
규 모	지상1층5동, 지상2층5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7.25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차폐식재 할 것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22

22.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등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38, 13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신청(안)	비고
신청부지	331㎡	
지 목	답	
건축면적	61.89㎡	건폐율 18.70%
연 면 적	96.81㎡	용적률 29.25%
규 모	지상 2층	
절·성토	성토 2.0~4.4m	L형옹벽설치 93m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7.3m	

라. 참고사항

(1) 서면조사의견('19.06.12./문화재전문위원 ○○○)

○ 본 신청은 문화재에서 약 1.0m 이격된 농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지상2층 최고높이 7.3m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문화재구역과 연접해 있고 성토를 위한 옹벽 설치로 인해 지형변화의 우려가 크므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23

23.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등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38, 13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3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신청(안)	비고
신청부지	504㎡	
지 목	답	
건축면적	69.8㎡	건폐율 12.28%
연 면 적	96.8㎡	용적률 19.21%
규 모	지상 2층	
절·성토	성토 0.5~4.0m	L형옹벽설치 35m, 역L형옹벽 7m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7.3m	

라. 참고사항

(1) 서면조사의견('19.06.12./문화재전문위원 ○○○)

○ 본 신청은 문화재에서 약 7.3m 이격된 농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지상2층 최고높이 7.3m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문화재구역과 연접해 있고 성토를 위한 0.5~4.5m옹벽 설치로 인해 지형변화의 우려가 크므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24

2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 진출입로 도로부지 조성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 진출입도로 부지조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등

(3) 신청내용<**단독주택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38, 137-2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신청(안)	비고
신청부지	297㎡	
지 목	답	
도로폭	5.5m	
마감재	아스팔트	
절·성토	성토 0.5~1.4m	L형옹벽설치 62m

라. 참고사항

(1) 서면조사의견('19.06.12./문화재전문위원 ○○○)

○ 본 신청은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연접지에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 개발과 연동

되어 진행됨으로 주택의 허가사항에 동반되어 검토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25

25. 용인 보정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용인 보정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재 신청한 사항임.

- '18년 10차 소위원회('18.12.26.)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절토 과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제500호 / 2009.06.24.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53-1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1차('18.12.26/부결)	재신청(안)	비고
신청면적	1,071.0㎡	1,123.0㎡	
지 목	임야	임야	
건축면적	79.65㎡	79.65㎡	
연 면 적	79.65㎡	79.65㎡	
규 모	지상 1층	지상 1층	
구 조	경량철골	경량철골	
최고높이	5.7m	5.7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절토 과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26

26.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3차 소위원회('19.03.27.)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절토 과다)
- '19년 5차 소위원회('19.05.22.)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안성 도기동 산성(사적 제536호 / 2016.10.24.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66(도기동) 일원

(3) 신청내용<**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70-7번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19m 이격)

○ 사업내용

구분	1차(3.27./부결)	재신청(안)	비고
신청면적	7,734.0㎡	3,992.0㎡	도로면적 8㎡ 미포함
지 목	임	임	
건축면적	990㎡	495㎡	1동 감소
연 면 적	990㎡	495㎡	1동 감소
규 모	지상1층	지상1층	
절토높이	0~15m	0~4.5m	도로점용허가 신청지
구 조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최고높이	5.0m	5.0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07./前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안성 도기동 산성에서 119m 이격된 부지에(허용기준 없음)에 근린생활시설 1개동(연면적 495㎡, 최고높이5m) 신축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대지는 절·성토 2m 범위로 되어 있고, 진출입로는 0~4.5m높이로 기존 왕복 4차선 도로 절토사면을 절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문화재와 일체성, 조망성에 영향이 적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9.03.1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안성 도기동 산성에서 119m 이격된 곳(허용기준 없음)에 임야를 15m 정도 절개하고 건축면적 990㎡, 높이 5m의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형 절개에 의한 절토가 심하며 건축면적이 커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27

27. 부여 가림성 주변 입목벌채 및 작업로 개설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 주변 입목벌채, 조림, 작업로 개설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가림성 주변 입목벌채, 조림, 작업로 개설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9년 4차 소위원회('19.04.24) 부결 : 문화재 안전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가림성(사적 4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길 167 일원

(3) 사업내용<**입목벌채 및 조림**>

○ 위치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 산153{문화재구역으로부터 0.5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신청내용

- 부지면적 73,983㎡ / 신청면적 73,900㎡
- 모두베기 4,177본(리기다, 기타 활엽수, 신갈, 상수리 등) / 부지내 잔존 소나무 735본(전체 본수의 약18%) / 조림 12,220본(밤나무, 편백나무) / 작업로 개설 950m(2,850㎡)

라. 참고사항

(1) 서면검토 및 조사의견('19.06.24/매장문화재전문가 ○○○)

○ 금번 사업으로 인해 작업로가 개설되는 곳은 가린성의 내성 북성벽과 외성의 북성벽 밖에 해당함

○ 이에 따라 작업로에 의해 성벽시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 다만 작업로 개설부지 일부가 성벽과 가까운 곳에까지 설치될 예정이므로 혹시모를 매장문화재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전문가의 이회하에 작업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관리단체 의견

○ 금번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은 사적 제4호 임천면 가림성 주변에 입목벌채하는 사항임. 사업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제1구역(개별심의)에 위치함

○ 입목벌채는 전체면적(7.39ha) 중 벌채(면적 : 6.50ha)를 할 계획이며, 임산물의 활용계획은 (리기다나무(258.33㎡), 기타활엽수(44.57㎡), 신갈나무(29.15㎡),소나무(193.27㎡))이며, 조림계획으로는 밤나무 1,120본, 편백나무 11,100본임

○ 사업대상지가 부여 임천면 가림성(사적 제4호)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문가 입회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28

28.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태양광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태양광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송국리 유적(사적 249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1 일원

(3) 사업내용**<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635-14{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3m 이격 /3구역(태양광 등 유사시설 개별심의)}

○ 신청내용

- 면적 및 규모 : 967㎡ / 터파기 44.75㎡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29

29. 부여 나성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주변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나성 주변에 기존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58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 일원

(3) 신청내용<**무허가 축사 양성화**>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475-1

	이격거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목	매장문화재 현황
내용	296m 이격	6구역 ※ 공통사항 : 개별심의	전	유존지역 아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4,231㎡(매장유존지역 아님) / 신청면적 3,700㎡
- 건축규모 및 재질 : 총 2동(신축) / 철 쇠파이프 구조

1동	2동
1,327.59㎡ / 우사	734.61㎡ / 우사

라. 참고사항(신청지 주변의 유사사례 건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

(1) 현지조사의견('19.05.13./문화재위원 ○ ○ ○)

○ 금번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은 부여 능안골 고분군, 부여 나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근거리에 위치한 총 3곳의 사적 주변에 허가 없이 증축 또는 신축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신청한 총 8건 중 하나로,

○ 총 3건 사적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공통으로

설정되어 있고, 금번 8건의 신청 외에 추가로 약 10여건이 신청 예정이므로,

○ 이들 무허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여건, 그리고 허용기준 개별 구역 별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세부검토 기준을 설정 한 후, 개별 신청별로 이격거리, 조망성, 경관, 외관개선방안,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음

(2) 현지조사의견('19.05.16./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대상지 일대는 고도 부여를 대표하는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경관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특히, 보존영향 검토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기능적 특성(성, 고분군) 상 조망성 및 경관적 일체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검토기준이라 하겠음.

○ 다만, 기존 허용기준에 따라 유사시설이 기허가된 상황과 축사 양성화사업의 취지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원칙적으로 허용기준 상 1구역(중첩된 도지정 문화재 포함)과 문화재 구역에 인접한 지역의 축사는 경관저해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바 설치를 지양함.

○ 다만, 1구역이라도 이격거리가 상당하고 지형으로 조망이 차폐된 지역에 기허가된 우사는 유지하되, 증축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한 계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1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축사의 신축은 경관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30

30. 익산 미륵사지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주변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미륵사지 주변에 기존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150호 / 1966.06.22. 지정)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7 일원

(3) 신청내용<**무허가 축사 양성화**>

○ 위치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30-1. 114-1

	이격거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목	매장문화재 현황
내용	10m 이격	3구역 ※ 공통사항: 개별심의	임야, 전	유존지역 아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2,747㎡ / 신청면적 3,953.28㎡
- 건축규모 및 재질 : 총 21동(계장) / 철 쇠파이프 구조 / 최고높이 3.9m / 연면적 3,953,28㎡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의견

○ 본 사업은 익산미륵사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상 3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평지붕)/21m이하(경사지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삼십여년 전에 조성된(1985년 조성)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허용기준 상 공통사항으로 동물 관련 시설은 개별심의(2018.10.19.반영)

※ 신청인의 축사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축사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대상(2019년 9월 한)으로서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취해짐

○ 해당위치는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 200여미터 이격되어 있는 지역이나, 실제 미륵사지 사역과 이격거리가 커 조망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금번 신청한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과 축사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31

31. 익산 미륵사지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주변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미륵사지 주변에 기존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150호 / 1966.06.22. 지정)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7 일원

(3) 신청내용<**무허가 축사 양성화**>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 543-7

	이격거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목	매장문화재 현황
내용	401m 이격	4구역 ※ 공통사항: 개별심의	전	유존지역 아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679㎡ / 신청면적 396.78㎡
- 건축규모 및 재질 : 총 1동(우사) / 철 쇠파이프 구조 / 최고높이 4.1m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의견

○ 본 사업은 익산미륵사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상 4구역(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무허가 축사(2010년도 축조)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허용기준 상 공통사항으로 동물 관련 시설은 개별심의(2018.10.19.반영)로서, 그 이전에는 축사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었음

※ 신청인의 축사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축사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대상(2019년 9월 한)으로서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취해짐

○ 해당위치는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 450여미터 이격되어 있는 지역이나 미륵사지 사역과 이격거리가 커 조망성이나 축사규모에 비해 피해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상변경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32

32. 익산 제석사지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주변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제석사지 주변에 기존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제석사지(사적 405호 / 1998.05.12. 지정)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6 일원

(3) 신청내용<**무허가 축사 양성화**>

○ 위치 : 전북 익산시 평장리 445-1, 445-2, 445-6

	이격거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목	매장문화재 현황
내용	439m 이격	3구역 ※ 공통사항: 개별심의	목장	유존지역 아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345.9㎡ / 신청면적 총 710.58㎡
- 건축규모 및 재질 : 기4동→ 1동으로 증축 /철 쇠파이프 구조 / 최고높이 8.0m

기허가	금회 추인	추인 후 규모
549㎡ / 우사 387㎡, 퇴비사 162㎡	710.58㎡ / 축사 561.38㎡, 축사창고 196㎡	1,259.58㎡ / 축사 948.38㎡, 퇴비사 115.2㎡, 창고 196㎡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의견

○ 본 사업은 익산제석사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상 3구역(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무허가 축사(2006년도 축조)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신청인의 축사 가운데 증축한 부분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축사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대상(2019년 9월 한) 축사임.

○ 해당위치는 익산제석사지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 480여미터 이격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격거리가 커 조망성이나 축사규모에 비해 피해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상변경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33

33. 익산 토성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 주변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토성 주변에 기존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토성(사적 92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일원

(3) 신청내용<**무허가 축사 양성화**>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445-2, 산53-14

	이격거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목	매장문화재 현황
내용	167m 이격	1,2구역 ※ 공통사항: 개별심의	전, 임야	유존지역 아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9,280㎡ / 연면적 2,385.20㎡
- 건축규모 및 재질 : 총 5동(계사) / 철 쇠파이프 구조 / 최고높이 4.5m

1동	2동	3동	4동	5동(방역실)	총면적
594㎡	684㎡	560㎡	541.20㎡	6㎡	2,385.2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3.19./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 ○ ○)

○ 문화재 가치 및 현황

- 해당 문화재는 면단위 독립형 문화재의 특성을 지닌 토성으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입지는 동서축 반경 200미터까지 구릉형 산림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외곽으로 경작지 및 촌락, 창고 등이 형성되어 있음

○ 사전검토 신청 건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 본 건은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서측으로 194미터 이격하여 기 위치한 축사의 양성화(적법화)를 위한 허가신청 건임.
- 위치 상 문화재로부터의 이격거리가 가깝고 북서풍의 영향으로 토성방향으로 악취가 영향을 미치며, 토성에서 직접 조망이 이루어지고 있어, 악취로 인한 문화재 주변 관람환경의 저해, 익산토성의 내외부 조망성 저해 등 역사문화환경의 일체적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유사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 주변의 난개발로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향후 허가신청 시 보완내용

- 현상변경 신청 시 시설의 현대화 방안, 외관개선방안,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계획 등 다음사항을 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 있음
- 세부적인 규모에 대한 현황자료(계사면적, 사육두수 등)
- 시설현대화 방안
- 환경개선 방안(악취저감대책, 두수제한, 밀폐방안, 환기굴뚝높이조정 등)
- 외관 정비계획(문화재와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한 저채도 색상의 시설물 외관개선, 간결한 시설물 형태, 밀폐형 구조 등)
-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한 악취배출허용기준에 충족되는 수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

(2) 관리단체의견서

○ 본 사업은 익산토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상 2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십여년 전에 조성된(1980년대 조성)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허용기준 상 공통사항으로 동물 관련 시설은 개별심의(2018.10.19.반영), 그 이전에는 축사에 대한 규제사항 없음

※ 신청인의 축사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축사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대상(2019년 9월 한)으로서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취해짐

○ 해당위치는 익산토성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 200여미터 이격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문화재의 경관 및 보존관리 측면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과 축사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34

34. 울주 언양읍성 주변 도시계획도로(소2-22호) 개설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언양읍성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1966.12.27. 지정)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3) 신청내용<**도시도로계획(소2-22호) 개설**>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20m~30m 이격/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 사업내용 : 도로확장

- 제1공구 : L=115.0m, B=8.0m
- 제2공구 : L=119.5m, B=8.0m

(4) 신청인 의견

○ 도시계획도로(소2-22호)인 언양 서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기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구간을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기여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20./문화재위원 ○ ○ ○,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울주 언양읍성의 남문지 앞 폭 8m, 길이 115m 규모로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언양읍성의 역사성(필지규모, 골목), 이격거리,

노선등이 역사문화환경의 맥락을 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도로계획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35

35. 울주 언양읍성 주변 도시계획도로(소2-23호) 개설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언양읍성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1966.12.27. 지정)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3) 신청내용<**도시도로계획(소2-23호) 개설**>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동부리 171-10번지 외 12필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인접～약50m 이격/2, 3구역)

○ 사업내용

- 면적 : 도로조성 A=687㎡
- 규모 : L=113m, B=8m

(4) 신청인 의견

○ 도시계획도로(소2-23호)인 언양 서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기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구간을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기여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20./문화재위원 ○ ○ ○,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울주 언양읍성 남문지 앞 폭 8m, 길이 113m규모로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언양읍성의 역사성(필지규모, 골목), 이격거리, 노선

등이 역사문화환경의 맥락을 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도로계획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36

36. 울주 언양읍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언양읍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1966.12.27. 지정)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6-5번지 외 1필지(26-2번지)
{문화재구역과 인접/2구역(경사지붕 7.5m이하)}

○ 사업내용

구 분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비 고
대지면적	162.00㎡	162.00㎡	
건축면적	51.96㎡	80.29㎡	
연면적	90.83㎡	160.58㎡	
높이/규모	지상2층	8.90m/지상2층(경사지붕)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20./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울주 언양읍성의 문화재구역 연접 2구역(경사지붕 7.5m이하)에 건축면적 80.29㎡, 연면적 160.58㎡, 지상 2층의 8.90m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허용기준 높이를 초과하며, 주변 현황도 높지 않은점, 건축형태상 8.9m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을 고려할 때, 건축물 높이는 낮게 조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높이 과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37

37. 부산 동래 패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사적 제192호 「부산 동래 패총」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동래 패총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동래 패총(사적 제192호 / 1970.04.25. 지정)

○ 소 재 지 :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 319번길 60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38-3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 /3구역(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이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50.80㎡
- 건축면적 : 147.28㎡
- 연 면 적 : 813.12㎡
- 높이/규모 : 22.50m(*수정안 20m)/지상 6층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38

38.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사업대상지 15년 조건부 허가('15.5.28.)(*세부 허가사항은 주요내용 참조)
  · 사업시행 전 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동 건 허가여부는 재검토 될 수 있음(문화재구역에 편입 검토)
- '19년 4차 소위원회('19.04.24.)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65-1번지, 65-19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

○ 건축규모

구 분	기존 허가사항 ('15.05.28. 허가)	이전 신청사항 ('19.04.24. 부결)	금회 신청사항	비 고
대지면적	541.00㎡	611.00㎡	611.00㎡	
건축면적/연면적	74.88㎡/74.88㎡	170.00㎡/170.00㎡	105.00㎡/105.00㎡	증 30.12㎡
높이/규모	5.68m/지상1층	5.80m/지상1층	6.55m/지상1층	증 0.87m
양식	한옥식		한옥식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4.1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북문지 내측 문화재구역에 인접하여 기 허가된 한옥형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모 및 구조를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신청된 건으로 이격거리가 가깝고 주 탐방도성에 면하여 있어 직접 조망이 이루어지는 바, 규모와 구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신청된 안의 경우 당초보다 규모가 상당부분 증가하였고, 구조 및 마감등에 있어 문화재외의 조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성으로의 내·외부 조망에 있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5.04.29./문화재위원 ○○○, ○○○)

○ 가능하면 절차를 거쳐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병영성에 아주 인접된 구역임)

○ 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1층 한옥을 짓는 것을 허용하되, 문화재로부터 가능한 한 이격시켜 짓고 문화재와 한옥 사이에 수목 등으로 차폐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현지조사의견('15.03.02./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북문지 지정구역과 연접한 곳으로, 건축면적 74.88㎡, 높이 5.68m의 1층 규모 한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한옥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긍정적이긴 하나, 성곽과 연접하여 있으므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해당 필지는 유물산포지에 해당하므로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39

39.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5년 8차 소위원회('15.08.26.)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5년 9차 소위원회('15.09.23.) 조건부허가 : 시굴조사 실시
- '19년 4차 소위원회('19.04.24.)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동동, 서동, 남외동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남외동 43-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6m 이격)

○ 사업내용

구분	'15년 8차 소위 -부결	'15년 9차 소위 -원안가결	'19년 4차 소위 -부결	금회 신청	비고
대지면적	211.0㎡	좌동	좌동	좌동	
연면적 /건축면적	395.60㎡ /125.88㎡	좌동	좌동	좌동	
높이/규모	14.10m /지상4층+옥탑	11.40m /지상4층, 1동	13.70m /지상4층+계단층	**12.70m** /지상4층+계단층	증 1.3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4.1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남서측으로 56m 이격하여 기 허가된 다가구주택의 옥탑부를 증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당초 대비 2.3m가 높아질 경우, 주변의 기 개발정도 및 안건 처리 현황을 고려할 때,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최고높이 상승에 따라 성으로의 내·외부 조망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2) 현지조사의견('15.09.19./문화재위원 ○○○)

○ 변경한 설계안 대로 건축할 경우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40

40.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 주기장 및 사무실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사적 제366호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에 주기장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에 주기장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허가받아 사항에 대하여 행위허가 변경 신청한 사항임.

- '18년 9차 소위원회('18.11.28.) 조건부가결 : 전문가 입회조사 실시
- '19년 4차 소위원회('19.04.24.) 조건부가결 : 수목차폐 및 굴착 시 전문가 입회조사 필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구미 낙산리 고분군(사적 제366호 / 1991.10.25.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산98-4

(3) 신청내용<주기장 및 사무실 신축>

○ 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240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신청내용

기존 허가사항('19.04.24.심의)	변경 신청내용
○ 대지면적 : 661.0㎡ ○ 건축면적, 연면적 : 35㎡ ○ 건축규모 : 1동, 지상 1층, 최고높이 6.2m ○ 사업부지 출입구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차량출입 시 흙 등의 도로에 유출방지) ○ 사업부지 경계에 EGI 휀스 설치(H=2.40M) * 구미 낙산리 고분군 방향 휀스쪽으로 수목 차폐 ○ 건축면적 외에 잡석포장	○ 대지면적 : 661.0㎡ ○ 건축면적, 연면적 : 35㎡ ○ 건축규모 : 1동, 지상 1층, 최고높이 6.2m ○ 사업부지 출입구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차량출입 시 흙 등의 도로에 유출방지) ○ 부지 경계부 차폐목 식재 ○ 부지 내 콘크리트포장 ○ 건축물 위치변경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4.1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대학교 교수 ○○○)

○ 본 건은 문화재구역 외곽에서 북서측으로 330m이격된 필지(1구역)에 기허가된 건축행위(주기장)을 규모변경 없이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기장 내 건물 위치를 북쪽으로 1m가량 이동하고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건임.

○ 단면도 상 도로면보다 계획 대상지가 낮고 보다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건물 이동은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에 면하여 육안상 조망되는 면은 인공펜스 외부에 수목으로 차폐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굴착 시 전문가 입회조사 필요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41

41. 구미 황상동 고분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미 황상동 고분군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4차 소위원회('19.04.24.) 조건부가결 : 사면정비만 시행하되 시굴조사 선행할 것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구미 황상동 고분군(사적 제470호 / 2006.03.07.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68번지 외

(3) 신청내용<**도시계획도로 개설**>

○ 위치 : 경북 구미시 황상동 399번지 외 30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m 이격/2구역(평 8m, 경사 12m), 3구역(평 14m, 경사 18m)}

○ 사업내용

기존 허가사항('19.04.24.심의)	변경 신청내용	비 고
○ 사면 공사 : A=389㎡ - 흙깎기 57㎥, 사토 50㎥ - 식생옹벽블록 40㎡, 코어네트 392㎡	○ 사면공사 : A=389㎡ - 흙깍기 61㎥, 사토 53㎥ - 식생옹벽블록 40㎡, **게다블록 299㎡**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4.1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대학교 교수 ○○○)

○ 본 건은 문화재구역 남측으로 2구역과 3구역에 걸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사면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로 개설시 고분군의 능선 절토가

과도하여 역사문화환경의 일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반면, 안전을 고려한 사면정비(40m구간)는 필요함.(시굴필요)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06-042

42.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설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신설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신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사적 제516호 / 2011.07.28.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3) 신청내용<**경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설**>

○ 위치 : 경북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559-3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1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신청내용

구 분	바닥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39,751	100.0	-
주차장	24,439	61.5	주차면수 : 374대 (화물자동차 225대, 승용차 149대)
진입도로	3,942	9.9	B=15m, L=260m
녹지	11,011	27.7	-
관리동 (부대편익시설)	359	0.9	건폐율20%, 용적률100% 사무실, 휴식공간, 근린생활시설

(4) 신청인 의견

○ 경산시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해소, 주거환경 악화 및 안전상의 악화 예방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6.20./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산 임당동 조영동 고분군에서 410m 이격된 곳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에서 가까운 곳은 현 계획보다 여유있게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표조사 등 매장문화재조사 필요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할 것